

# 예산총칙

## 2019년도 추경3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회 계 별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계                     | 706,740,000 | 21,202,200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 | 694,200,000 | 20,826,000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 | 694,200,000 | 20,826,000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| 12,540,000  | 376,200    |
|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<br>기금특별회계 | 640,000     | 19,200    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     | 1,048,000   | 31,440     |
|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          | 809,000     | 24,270     |
|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<br>특별회계   | 2,148,000   | 64,440     |
|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| 35,000      | 1,050      |
| 주차장특별회계               | 7,860,000   | 235,800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,701,233천원으로 한다.

(일반예비비 4,623,992천원, 목적예비비 18,077,241천원)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